

#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등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안일시 : 2001. 12. 7.  
제안자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1. 제안이유

지방의회 부활 10년째를 맞아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시의 조례전반에 대해 상위법개정과 조작개편 등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조례건수 : 162건
- 정비건수 : 59건
- 유형별 정비현황(세부내역 : “불임” 개정조례안 참조)
  - 시민편의 도모 : 6건
  - 업무효율성 도모 : 7 "
  - 현실 부적합 : 8 "
  - 법령개정 : 14 "
  - 포괄규정 삭제 : 13 "
  - 관직명칭 변경 : 4 "
  - 불필요, 착오자구 수정 : 13 "
  - 누락부분 정비 : 4 "

##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

## 4.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5. 불 임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 1부.

- 條例整備特別委員會 -

# 運營結果 報告書

忠 州 市 議 會  
條例整備特別委員會

# 條例整備特別委員會 運營結果

- 지방의회 부활 10년째를 맞이하여 자치입법기능을 활성화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
-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도모

## □ 運營概要

- 위원회 구성
  - . 일      시 : 2000. 9. 1
  - . 명      칭 : 충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 . 구성인원 : 충주시의회 의원 8명
    - 이학영(위원장), 백승덕(간사), 임병현, 이승의, 안규진, 채준병, 정규용, 박인규
- 운영기간 : 2000. 9. 1 ~ 2001. 11.
- 정비대상 : 166건 (조례 162건, 규칙 4건)
- 정비건수 : 61건 (조례 59건, 규칙 2건)
- 정비방법
  - . 주1회 특위를 개최하여 국별로 조례검토
  - . 중점 검토사항
    -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저해되는지 여부 및 법령 근거여부
    - 시민에게 과중한 불편과 부담을 주는지 여부
    - 기타 현실 부합여부 및 표현의 적절성, 해석상의 문제성 여부
  - .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 실무 의견 청취

□ 運營 經過

차 수	일 시	장소(회의명)	내 용	비 고
제55회 임시회	2000. 9. 1	제1차 본회의	. 조례특위 구성	
제 1차 위원회	2000. 9.22	총무위원회 회 의 장	. 위원장,간사선임 . 운영계획서 작성	
제 2차 위원회	2000.10.10	산건위원회 회 의 장	. 정비계획 협의	
제 3차 위원회	2000.10.17		. 정비계획 협의	
제56회 임시회	2000.10.24	제1차 본회의	. 운영계획 승인	
제 4차 위원회	2001. 2.20		. 조례정비 검토	
제 5차 위원회	2001. 2.27		. 조례정비 검토	
제60회 임시회	2001. 3.23		. 특위활동기간 연장	
제 6차 위원회	2001. 4. 3		. 조례정비 검토	
제 7차 위원회	2001. 4.10		. 조례정비 검토	
제 8차 위원회	2001. 4.28		. 조례정비 검토	
제 9차 위원회	2001. 7. 3	산건위원회 회 의 장	. 조례정비 검토	
제10차 위원회	2001. 7. 9		. 조례정비안 작성	
제11차 위원회	2001. 9.25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운영위 소관
제12차 위원회	2001.10. 5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실무의견 청취	총무위 소관
제13차 위원회	2001.10.16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실무의견 청취	산건위 소관
제14차 위원회	2001.11. 6		. 조례정비초안 작성	
제15차 위원회	2001.11. 7		. 실무의견 청취	
제66회 임시회	2001.11.21	의원연석회의	. 조례정비초안 검토	
제16차 위원회	2001.11.30	산 건 회 의 장	. 결과보고서 채택	

□ 條例整備 結果

가. 조례정비 유형

실과소별	조례 건수	정비 건수	정비유형							
			시민 편익 도모	업무 효율성 도모	현실 부적합	법령 개정	포괄 규정 삭제	관직 명칭 변경	불필요 착오자 구수정	누락 부분 정비
계	166(4)	61(2)	6	8(1)	8	14	3	4	14(1)	4
의회사무국	12(4)	8(2)		2(1)		2		1	3(1)	
공보담당관실	1	0								
총무과	18	5			1		1	1	2	
기획감사과	11	0								
문화관광과	7	3	2							1
세정과	5	4	1					2	1	
회계과	6	4		1		1				1
시민생활지원과	2	1				1				
사회진흥과	9	6		1	1	1	2			1
가정복지과	15	8	1	1	1	3				2
환경미화과	8	1				1				
농업정책과	4	2			2					
농업생산지원과	1	0								
산림녹지과	5	1	1							
지역경제과	8	4			2	1			1	
지역개발과	11	6		2		2			2	
도로과	5	1								1
교통과	4	0								
지적건축과	5	2		1						1
보건소	6	1				1				
농업기술센타	3	2			1	1				
상수도사업소	4	2	1							1
체육시설관리소	1	0								
문화회관관리소	1	0								
박물관	1	0								
여성회관	1	0								
도서관	1	0								
읍면동	7	0								

※ ( )내서는 규칙

나. 조례정비 결과

-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 충주시조례 제 호

###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등개정조례안

제1조(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회운영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의장과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제4항을 삭제 한다.

제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겸할 수 없다.

제2조(충주시의회윤리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의 개정) 충주시의회 윤리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충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과반수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윤리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3조(충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개정)

충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충주시의회의장”을 “충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5조(충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개정) 충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시의회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6조(충주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주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중 “7월·8월”을 “9월·10월”로 한다.

제7조(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의 개정)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총무처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하고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충주시포상조례의 개정) 충주시포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제4호를 삭제 한다.

제9조(충주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의 개정) 충주시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호를 삭제 한다.

제11조(충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장이”를 “시의회의장이”로 한다.

제12조(충주시문화상조례의 개정) 충주시문화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수상자가”를 “수상대상자가”로 한다.

제13조(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의 개정)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4세”를 “20세”로, “하사이하” 다음에 “(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삽입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어른”을 “일반”으로, “24

- 세"를 "21세"로 하며, 같은조 제4호중 "자"를 "일행"으로 한다.  
제4조중 조제목을 "관람료 감면"으로 하고, 같은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증명을 소지한 자.
  7. 충주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 입장하는 경우.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충주시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소지한 자에게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관람 및 시설의 개방시간) 관람 및 시설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일 ~ 10월31일) 09:00~18:00시
2. 동절기(11월1일 ~ 익년 2월말) 09:00~17:00시

[별표1]중 "어른"을 "일반"으로 한다.

[별표2]중 "24세이상"을 "21세이상"으로 "24세이하"를 "20세이하"로 하며, "국민학생"을 "초등학생"으로 하고 "※관람시간 : 09:00부터 18:00까지"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어른"을 "일반"으로 한다.

제14조(충주시립평리사적공원관람료등징수에관한조례의 개정) 충주시립평리사적공원관람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중 "초등학교"를 "초등학생"으로하고, 같은조 제2호중 "군인을 말한다"를 "군인"으로 하며, 같은조 제3호중 "자를 말한다"를 "자"로 하고, 같은조 제4호중 "관람함을 말한다"를 "입장하는 일행"으로 한다.

제5조의 조제목을 "관람료 감면"으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항 제7호 및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증명을 소지한 자.
7. 충주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 입장하는 경우.

② 충주시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소지한 자에게는 관람료의 50페센트를 감면한다.

제16조 제5호 및 제17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5조(충주시시세조례의 개정) 충주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조제목 "세율"을 "세율 및 세액"으로 한다.

같은조 제1항중 "세율"을 "세액"으로 하고 제1호 가목중 "(동지역)"을 "(읍·면·동지역)"으로 하며, 나목을 삭제하고 다목을 나목으로 하며, 제2호중 "세율"을 세액"으로 한다.

제17조중 "계기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8조의4제1항중 "시장(군수)"를 "시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시(군)금고에"를 "시금고에"로 한다.

제16조(충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개정) 충주시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제17조(충주시수입증지조례의 개정)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로 하고, 제3호중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통대장"을 "지역 예비군 읍·면·동대장"으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국가유공자증서 및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제19조(충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의 개정) 충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지방의회의”를 “시의회의”로 한다.

제20조(충주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충주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상단의 “○○○”을 “주소, 성명”으로 한다.

제21조(충주시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조례의 개정) 충주시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30일이내에”를 “5일이내에”로 한다.

제22조(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공유재산에 관하여”를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중 “직할시지역”을 “광역시지역”으로 한다.

제23조(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의 개정)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1년 이내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중 “매년”을 “2년마다”로 한다.

제25조(충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 개정) 충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호중 “제28조”를 “제8조”로 한다.

제26조(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의 개정)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기타 수익금”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의 개정)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중 “사업의”를 “사업을”로 한다.

제11조제3호중 “미만”을 “이하”로 한다.

제1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8조(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개정)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0조(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의 개정)**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하고, 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 “새마을지도자”를 삭제한다.

**제31조(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개정)**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3조중 “500백만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12조중 조제목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로 하고 같은조제1항 및 같은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3월이내에”를 “80일이내에”로 하고 같은조제3항중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다음 회계년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로 한다.

제34조(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법령, 조례, 기타 시장이 명하는”을 “법령, 조례에 의한”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용자격) 제2조의 장묘시설은 사망자가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묘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충주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장내의 무연분묘에서 발굴되는 유골
3. 각종사고 및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체를 처리하기 어려운자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가산징수) 시장은 장묘시설 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묘지사용료와 관리비를 30퍼센트 가산하여 징수 할 수 있다.

1. 사망자가 충주시에 사망일 기준 3월 미만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미성년자, 사산아 및 개장유골을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개장유골을 기존 공설묘지에 합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의 개정)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중 “기타 수익금”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2조 중 조제목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3월이내에”를 “80일이내에”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다음 회계년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로 한다.

**제36조(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의 개정)**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제37조(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운용 심의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내지 제9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조 제3항을 삭제 한다.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개정)**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제39조(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의 개정)** 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서기 각 1인”을 “서기 1인”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간사는 토지관리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자가 된다

제40조(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의 개정)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중 “대부”를 “대여”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별표]를 삭제한다.

제41조(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의 개정)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각 동장 또는 리장은”을 “각 읍·면·동장은”으로 하고, “동·리개발위원회”를 “읍·면·동개발위원회”로 하며, “풍부한 자 1인을”을 풍부한 자를“로 한다.

제42조(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의 개정)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에 “초등학생”을 “초등학생 포함”으로 하고, 제2호에 “전투, 의무경찰, 방위병”을 “전투·의무경찰”로 하며, 제4호에 “20인”을 “30인”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입장료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3.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

급 1급에 해당하는 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증명을 소지한 자.
5. 65세 이상인 자
6. 학술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제43조(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의 개정)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명칭과 위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중앙공설시장	충주시 성서동 306,307,308번지
충주공설시장	충주시 성서동 13,14,16~18번지 충주시 충의동 144,231,233,234,258,260~262번지 충주시 문화동 825,806,809,810,813,814번지 충주시 봉방동 773-3번지

제44조(충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의 개정) 충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위치와 시설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면 적	동수	건평(면적)
중앙공설시장	충주시 성서동 306번지 일원	2,863m <sup>2</sup>	1	4,559.15m <sup>2</sup>
충주공설시장	충주시 충의동114번지 일원	1,750.18m <sup>2</sup>	6	3,500.36m <sup>2</sup>

제45조(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충주시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3항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충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의 개정) 충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4번지 및 16번지에”를 “14번지 일원에”로 한다.

제47조(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의 개정)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실과장중에서 6인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를 “과장중에서 허가난원과장, 환경미화과장, 농업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역개발과장, 도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제2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8조(충주시사토장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의 개정) 충주시사토장설치운영및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관할구역내에”를 삭제한다.

제49조(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의 개정)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5호중 “배재”를 “배출”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중 “부과액 조정을 신청”을 “이의신청을”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제10호와 같은조제3항제14호중 “부과액 조정”을 “이의”로 한다.

**제50조(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의 개정)**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토석사력등”을 “토석,사력등”으로 한다.

**제51조(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개정)**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기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세계현금의 예예”를 “일반회계의 예예”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의 개정)**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상황반장”을 삭제하고 같은조제2항중 “기획행정국장”을 “경제건설국장”으로 하며, “상황반장은 경제건설국장”을 삭제한다.

제3조제7호중 “충주댐사무소”를 “충주권관리단”으로 하고, 같은조제11호중 “공군3515부대”를 “공군3710부대”로 한다.

**제53조(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의 개정)**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부득이”를 삭제한다.

**제54조(충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충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보험에 하여야 한다.”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하고 단서조항중 “않을 수 없다.”를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55조(충주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충주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6조(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의 개정)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기타 수익금”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7조(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의 개정)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의료보험법에”를 “국민건강보험법에”로 하고 “의료보험진료수 가”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한다.

제6조중 “의료보험진료수가”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한다.

(별지 서식)중 7.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의 수수료 “2,000원”을 “1,500원으로 한다.

제58조(충주시수도급수조례의 개정)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읍·면·동 광역상수도 신설공급지역에 대하여는 급수공사비를 2년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급수관 등 시설이 완료되어서 급수가 가능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급수신청한 수용가에 한한다.

④제3항의 급수공사비 분할납부는 상수도 사용 승인후 시장은 다음달부터 수도요금과 합산하여 고지하고 수용가는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제59조(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표시할 수 있다”를 “표시할 수 없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조는 2002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 표

### ○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생략)</p> <p>②의회운영위원회는 <u>부의장과 타 위원회 위원장, 간사를 포함하여</u> 구성한다.</p> <p>③의장은 상임위원회이 될 수 없고, 부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p> <p>④부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현행과 같음)</p> <p>②----- <u>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u> 구성한다.</p> <p>③의장과 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이 될 수 없다.</p> <p>④ &lt;삭 제&gt;</p>
<p>제6조(상임위원장) ①(생략)</p> <p>②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lt;신설&gt;</p>	<p>제6조(상임위원장) ①(현행과 같음)</p> <p>②----- ----- <u>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겸할 수 없다.</u></p>

### ○ 충주시의회윤리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충주시의회윤리위원회설치운영등에 관한조례</p> <p>제11조(징계의 종류 및 의결) ①(생략)</p> <p>②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재적위원 <u>과반수이상</u>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명 : 충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설치운영 등에관한조례</p> <p>제11조(징계의 종류 및 의결) ①(현행과같음)</p> <p>②----- ----- <u>과반수</u> -----.</p>
<p>제1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등) ①(생략)</p> <p>②전항 회의규칙 각조의 "징계자격특별 위원회"는 동조례 "<u>유리위원회</u>"로 대체한다.</p>	<p>제1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등) ①(현행과같음)</p> <p>②----- ----- <u>"유리특별위원회"</u>-----.</p>

#### ○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범위) 1.(생략)</p> <p>2. 시장의 보조기관중 <u>실·국장</u>, 담당 관·과장급</p>	<p>제2조(범위) 1.(현행과같음)</p> <p>2. - - - - - <u>국장</u>, - - - - -</p>

## ○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생략)	제2조(범위) 1.(현행과 같음)
2. “ <u>회의수당</u> ”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u>회의수당</u> 을 말한다.	2. <u>회기수당</u> - - - - - - - - - - <u>회기수당</u> - - -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생략)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시의원 당해년도 <u>회의수당</u> 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할 수 있다.	2. - - - - - - - - - - <u>회기수당</u> - - - - - - - - - - - - - -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생략)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u>충주시의회의장을</u> 경유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u>충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 - - - - - - - - - - -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생략)	①(현행과 같음)
② 1.(생략)	② 1.(현행과 같음)
2. 시본청관련 실·국장중 1인	2. - - - - - <u>국장</u> - - - - -

○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③ (생략)</p> <p>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u>시의회의장</u>의 통보 등으로 시장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 - - - <u>의장</u> - - - - - - - - - -</p>

○ 충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집회)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 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p> <p>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12일에 집회 한다. 다만, 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4조(집회)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u>9월·10월</u> - - - - -</p>

## ○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생략)</p> <p>2.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여비규정 제2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와 여비규정 제1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p>	<p>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준용) - - - - -</p> <p>-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중 앙인사위원회" - - - - -</p> <p>- - - - -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 - - - - -</p> <p>- - - - - "중앙 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 - - - - -</p>

## ○ 충주시포상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p> <p>①~②(생략)</p> <p>③ (생략)</p> <p>4. 수상자는 1년간 시정 참여 기회 부여</p>	<p>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 ○ 충주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실용신안 및 의장에관한 준용)</p> <p>①(생략)</p> <p>②1항의 경우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서는 50만원, 의장권에 대하여서는 30만원으로 한다.</p>	<p>제28조(실용신안 및 의장에관한 준용)</p> <p>①(현행과 같음)</p> <p>②제1항 - - - - -</p> <p>- - - - -</p> <p>- - - - -</p> <p>- - - - -</p>

○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p>	<p>제10조(직권면직) - - - - -</p> <p>- - - - -</p> <p>- - - - -</p> <p>-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 충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조례)</p> <p>②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p>	<p>제3조(조례)</p> <p>②시의회의장이 - - - - -</p> <p>- - - .</p>

○ 충주시문화상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수상대상자) ①(생략)</p> <p>②문화상 수상은 각 부문별로 1명씩 시상한다. 다만, 수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2조(수상대상자) ①(현행과 같음)</p> <p>②- - - - -</p> <p>- - - - - , 수상대상자가 -</p> <p>- - - - -</p>

○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관람료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만7세이상 12세이하인 자 ( <u>국민학교 학생 포함</u> ) 2. 청소년 및 군인 : 13세이상 <u>24세</u> 이하인 자와 <u>하사이하의</u> 군인	제2조(적용범위) - - - - - - - - - - 1. - - - - - ( <u>초등학교 - - - -</u> ) 2. - - - - - <u>20세</u> - - - - - <u>하사이하(전투,</u> <u>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u> <u>다)</u> - - 3. <u>일반</u> : <u>21세</u> - - - - - - - - - - 4. - - - - - - - - - - <u>일행</u>
제4조(무료관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3.(생략) 4. <u>65세이상 노인</u>	제4조(관람료 감면) ① - - - - - - - - - - 1. ~ 3.(현행과 같음) 4. <u>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증명</u> <u>을 소지한 자</u> 7. <u>충주시 소재 초·중·고등학교</u> <u>학생이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u> <u>입장하는 경우</u> ② <u>충주시민을 입장할 수 있는 증명</u> <u>을 소지한 자에게는 관람료의 50퍼</u> <u>센트를 감면한다</u>
<신 설>	제9조(관람 및 시설의 개방시간) 관람 및 시설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u>하절기(3월1일 ~ 10월31일)</u> <u>09:00 ~ 18:00시</u> 2. <u>동절기(11월1일 ~ 익년 2월말)</u> <u>09:00 ~ 17:00시</u>
제9조(규칙) (생략)	제10조(규칙) (현행 제9조와 같음)

○ 충주시립평리사적공원관람료등징수에 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관람료 및 주차시설 이용료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 : 만7세이상 12세이하인 자(<u>초등학교 포함</u>)</li> <li>청소년 및 군인 :13세이상 20세이하인 자와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전투,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의 <u>군인을 말한다</u>.</li> <li>일반 : 21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li> <li>단체 : 30인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u>관람함을 말한다</u>.</li> </ol> <p>제5조(무료관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생략)</li> <li><u>65세이상의 노인</u></li> <li>~ 6.(생략) <u>&lt;신설&gt;</u></li> <li>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u>&lt;신설&gt;</u></li> </ol>	<p>제3조(적용범위)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 - -</li> <li>- - - - - (<u>초등학생 포함</u>)</li> <li>- - - - -</li> <li>- - - - - (<u>군인</u>)</li> <li>- - - - - (<u>자</u>)</li> <li>- - - - - (<u>입장하는 일행</u>)</li> </ol> <p>제5조(관람료 감면) ①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현행과 같음)</li> <li><u>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증명을 소지한 자</u></li> <li>~ 6.(현행과 같음)</li> <li><u>충주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 입장하는 경우</u></li> </ol> <p><u>&lt;삭 제&gt;</u></p> <p>②<u>충주시민을 입장할 수 있는 증명을 소지한 자에게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u></p>
<p>제16조(관람객의 행위제한) 관람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생략)</li> <li><u>기타 시장이 제한하는 행위</u></li> </ol> <p>제1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생략)</li> <li><u>시장이 특별한 사유로 관람을 제한한 자</u></li> </ol>	<p>제16조(관람객의 행위제한)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현행과 같음)</li> </ol> <p><u>&lt;삭 제&gt;</u></p> <p>제17조(관람의 제한)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현행과 같음)</li> </ol> <p><u>&lt;삭 제&gt;</u></p>

○ 충주시시세조례

현 행	개 정 안				
<b>제15조(세율)</b> ① <u>군등 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u>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동지역) : 5,000원 나.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읍·면지역) : 5,000원 다.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tr><td style="width: 50%;">구분</td><td style="width: 50%;">세율</td></tr></table>	구분	세율	<b>제15조(세율 및 세액)</b> ① - - - - - 세액 - - - - - 1. 개인 가. - - - - - (읍·면·동지역) : 5,000원 <삭 제> 나. - - - - - 2. 법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tr><td style="width: 50%;">구분</td><td style="width: 50%;">세액</td></tr></table>	구분	세액
구분	세율				
구분	세액				
<b>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b> 법 제184조 및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u>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b>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b> - - - - - - - - - - - - - - - <u>해당하는</u> - - - - - - - - - - - - - - -				
<b>제28조의4(신고납부 등)</b> ① <u>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부 기한내에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u> 이 경우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u>시장(군수)</u> 을 시가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② <u>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u>시(군)금고에</u> 납부하여야 한다.</u>	<b>제28조의4(신고납부 등)</b> ① - - - - - - - - - - - - - - - - - - 시장 - - - - - - - - 시장 - - - - - ② - <u>시금고에</u> - - - - - - - - - -				

## ○ 충주시지방세입장수포상금지급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u>제작확인</u>	(별지 제1호서식) <u>담당확인</u>
(별지 제2호서식) <u>제작확인</u>	(별지 제2호서식) <u>담당확인</u>

### ○ 충주시수입증지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판매인에 대해서 종지 판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1. ~ 2.(생략)</p> <p><u>3. 기타 시장이 계약의 해지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u></p>	<p>제10조(계약의 해지) - - - - -</p> <p>- - - - -</p> <p>- - - - -</p> <p>- - - - -</p> <p>1. ~ 2.(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 ○ 충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 충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생략) 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용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지방의회의</u>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u>시의회의</u> - - - - - - - - - -

○ 충주시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정보증)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3조(재정보증) ①- - - - - - - - - - 5일 이내에 - - - - -

○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시공유재산심의회) ①(생략) ②(생략) 1. ~ 2.(생략) 3. 기타 <u>공유재산에 관하여</u>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공유재산심의회)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 - - <u>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u> - - - - - -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 ~ ②(생략) ③(생략) 1. 특별시· <u>직할시지역</u> : 30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 ~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 - - - <u>광역시지역</u> - - - - - - - - - - - - - - - - -

○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p> <p>① <u>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u></p> <p>② <u>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u></p>	<p>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p> <p>① <u>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u></p> <p>② <u>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u></p>

○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사용허가)</p> <p>① <u>회관의 시절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u></p> <p>제18조(사용료 결정)</p> <p>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단,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종전의 결정에 의한다.</p>	<p>제16조(사용 허가)</p> <p>①----- ----- -----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p> <p>제18조(사용료 결정)</p> <p>----- 2년마다 ----- ----- ----- ----- -----.</p>

○ 충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용자금의 반환) 시장은 용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1. 새마을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p> <p>제19조(체납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지방세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1.(생략)</p> <p>2.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상환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p>	<p>제18조(용자금의 반환) - - - - -</p> <p>- - - - -</p> <p>- - - - -</p> <p>- - - - -</p> <p>&lt;삭 제&gt;</p> <p>제19조(체납처분) - - - - -</p> <p>- - - - -</p> <p>- - - - -</p> <p>1.(현행과 같음)</p> <p>2. 제8조 - - - - -</p> <p>- - - - -</p>

○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생략)</p> <p>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p> <p>&lt;신 설&gt;</p> <p>제8조(규칙)(생략)</p>	<p>제2조(기금조성) - - - - -</p> <p>- - - - -</p> <p>1.(현행과 같음)</p> <p>2. - - - - -</p> <p>- - 기타 수입금</p> <p>제8조(기금운영계획·결산보고)</p> <p>①시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p> <p>②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9조(규칙) (현행 제8조와 같음)</p>

○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허가취소)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시장은 이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1. ~ 2.(생략)      3.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u>사업의</u>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때</p>	<p>제7조(허가취소) - - - - -      - .      1. ~ 2.(현행과 같음)      3. - - - - - <u>사업을</u></p>
<p>제11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2.(생략)      3. 6세미만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p>	<p>제11조(수수료의 면제) - - - - -      - - - - -      - - - .      1. ~ 2.(현행과 같음)      3. - - <u>이하</u> - - - - -</p>
<p>제12조(입장거절 및 퇴장)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1. ~ 4.(생략)      5.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p>	<p>제12조(입장거절 및 퇴장) - - - - -      - - - - -      - - .      1. ~ 4.(현행과 같음)      &lt;삭제&gt;</p>

○ 충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p> <p>① <u>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u></p> <p>② <u>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u></p>	<p>제8조(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p> <p>① <u>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u></p> <p>② <u>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u></p>

○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사용료의 감면) ①(생략)</p> <p>1. ~ 3.(생략)</p> <p>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p>	<p>제16조(사용료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p> <p>1. ~ 3.(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 충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응자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응자대상)</p> <p>① 기금의 응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장애인 가구주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p> <p>1. ~ 4.(생략)</p> <p>5.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p>	<p>제3조(응자대상)</p> <p>①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 - - -</p> <p>- - - - -</p> <p>1. ~ 4.(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제5조(신청절차)</p> <p>① 기금의 응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거주지 읍, 면, 동의 새마을지도자, 통, 리장 및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제5조(신청절차)</p> <p>① - - - - -</p> <p>- - - - - &lt;삭제&gt; - -</p> <p>- - - - -</p>

○ 충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 제10조(생략)</p> <p>&lt;신설&gt;</p>	<p>제1조 ~ 제10조(현행과 같음)</p> <p>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p> <p>①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11조(시행규칙) (생략)</p>	<p>제12조(시행규칙) (현행 제11조와 같음).</p>

#### ○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대상) 이 기금은 충주시교육장 또는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이 가능한 인원을 선정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생활보호법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p> <p>제10조(기금결산)</p> <p>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충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조(지원대상) - - - - -</p> <p>- - - - -</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 - -</p> <p>- - - - -</p> <p>제10조(기금결산)</p> <p>① - - - - - 80일 이내에</p> <p>- - - - -</p> <p>②(현행과 같음)</p> <p>③ - - - - -</p> <p>- - - 다음 회계연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 - - - - -</p> <p>- - - - -</p>

##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개장을 명할 수 있다.</u></p> <p>1. ~ 4. (생략)</p> <p>5. <u>법령, 조례, 기타 시장이 명하는 처분을 위반 하였을 때</u></p>	<p><u>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 - - - -</u></p> <p>1. ~ 4.(현행과 같음)</p> <p>5. <u>법령, 조례에 의한 - - - - -</u></p>
<p><u>제5조(사용자격) ① 묘지는 망인이 사망일기준 6월전에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묘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허가는 다음 각호의 1의 자로 한다.</u></p> <p>1. 망인이 사망일기준 충주시에 6월미만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p> <p>2. 각종사고 및 재난을 위하여 발생된 사체를 처리하기가 어려운자</p>	<p><u>제5조(사용자격) 제2조의 장묘시설은 사망자가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묘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u></p> <p>1. <u>충주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자</u></p> <p>2. <u>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장내의 무연분묘에서 발굴되는 유골</u></p> <p>3. <u>각종사고 및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체를 처리하기 어려운자</u></p>
<p><u>제12조(가산급 징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묘지사용료와 관리비를 3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u></p>	<p><u>제12조(가산징수) 시장은 장묘시설 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묘지사용료와 관리비를 30퍼센트 가산하여 징수 할 수 있다.</u></p> <p>1. <u>사망자가 충주시에 사망일 기준 3월 미만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u></p> <p>2. <u>미성년자, 사산아 및 개장유골을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개장유골을 기준 공설묘지에 합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①(생략)          ②(생략)          1.~2.(생략)          3.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u>기타 수익금</u></p> <p>제12조(<u>결산 및 보고</u>)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복지기금 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u>3월이내</u> 충주시장에게 제출한다.          ②(생략)          ③복지기금 운용결산보고서는 <u>다음</u>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 - - - -          - <u>기타 수입금</u></p> <p>제12조(<u>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u>)          ①- - - - -          - - - - -          - - - - -          - - - - - <u>80일이내</u> - - - - -          - - - - -          ②(현행과 같음)          ③- - - - - <u>다음</u>  <u>회계연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u> - -          - - - - -</p>

○ 충주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4.(생략)  <u>&lt;신설&gt;</u>          5. (생략)</p>	<p>제2조(기능) - - - - -          - - - - -          1.~4.(현행과 같음)  <u>5.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u>          6. (현행 제5호와 같음)</p>

## ○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현 행	개 정 안
<u>제5조(심의위원회 구성)</u>	<u>제5조(기금운용 심의회)</u>
<p>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충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 및 여성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li> <li>2. 여성정책 및 복지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는 자</li> </ul> <p>⑤ 공무원이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p>	<p>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한 사항</li> <li>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li> <li>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li> </ol>
<u>제6조(위원회의 기능) (생략)</u>	<u>&lt;삭 제&gt;</u>
<u>제7조(위원장의 직무) (생략)</u>	<u>&lt;삭 제&gt;</u>
<u>제8조(회의) (생략)</u>	<u>&lt;삭 제&gt;</u>
<u>제9조(수당 등) (생략)</u>	<u>&lt;삭 제&gt;</u>
<u>제12조(기금결산)</u>	<u>제12조(기금결산)</u>
<p>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p> <p><u>&lt;삭 제&gt;</u></p>

○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p>	<p>제13조(수수료의 감면) - - - - -</p> <p>- - - - -</p> <p>- - - - -</p> <p>- - .</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p>

○ 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간사 및 서기)</p> <p>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각 1인을 둔다. <u>&lt;신설&gt;</u></p> <p>②(생략)</p>	<p>제7조(간사 및 서기)</p> <p>①- - - - -</p> <p>- - - - -서기 1인 - -</p> <p>②간사는 토지관리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자가 된다.</p> <p>③(현행 제2항과 같음)</p>

○ 충주시 양수기운영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 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서리 및 <u>대부</u>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대여 - - - - - - - - - -
제5조(대부절차) ①양수기를 <u>대부</u> 받 고자 하는 자는 <u>대부신청서</u> (별지 서 식)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u>대부</u> 받아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대부신청이</u> 있을 때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u>대부</u> 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절차) - - - 대여 - - - - - - 대여 - - - - - - - - - - 대여 - - - - - ② - - - - - - - 대여 - - - - - - - - - - 대여 - - - - - - - - - -
제6조(신청의 경합) <u>대부신청이</u> 경합 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u>대부</u>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 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 -
제7조(대부기간) ①대부기간은 읍· 면·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 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기간) 대여기간은 읍·면· 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8조(양도금지) <u>대부받은</u>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8조(양도금지) 대여 - - - - - - - - - - - - - - -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u>대부</u> 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 여야 한다. ②(생략) ③제2항에 의하여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관리 및 감독) ①대여 - - - - - - - - - - - - - ②(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의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부할 수 있다.</p> <p><u>제11조(사용료)</u>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 또는 통장을 포함한 2명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부터 10일간 사용료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 및 유류 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단위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동장의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p>	<p>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 - - - -  <u>대여</u> - - - - -</p> <p>제11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p> <p>제12조(반환 및 변상) - - - - - 대여 - - - - -          - - - - -</p>

○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의 위촉)</p> <p>①각 동장 또는 리장은 시장으로부터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u>동·리개발위원회</u>(<u>동 또는 리개발위원회</u>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u>동·리개발위원회</u>와 기능이 유사한 합의체)를 소집하여 법 제47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추천하여야 한다.</p>	<p>제6조(위원의 위촉)</p> <p>①각 읍·면·동장은 읍·면·동개발위원회(읍·면·동개발위원회 면·동개발위원회) - 풍부한 자를</p>

### ○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과 위치)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p>제2조(명칭과 위치) - - - - -</p> <table border="1"> <thead> <tr> <th>명 칭</th><th>위 치</th></tr> </thead> <tbody> <tr> <td>중앙공설시장</td><td>충주시 성서동 306,307,308번지</td></tr> <tr> <td>충주공설시장</td><td>충주시 성서동 13,14,16,~18번지 충주시 총의동 144,231,233,234,258, 260~262번지 충주시 문화동 825,806,809,810,813, 814번지 충주시 봉방동 773-3번지</td></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중앙공설시장	충주시 성서동 306,307,308번지	충주공설시장	충주시 성서동 13,14,16,~18번지 충주시 총의동 144,231,233,234,258, 260~262번지 충주시 문화동 825,806,809,810,813, 814번지 충주시 봉방동 773-3번지
명 칭	위 치						
중앙공설시장	충주시 성서동 306,307,308번지						
충주공설시장	충주시 성서동 13,14,16,~18번지 충주시 총의동 144,231,233,234,258, 260~262번지 충주시 문화동 825,806,809,810,813, 814번지 충주시 봉방동 773-3번지						

○ 충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장의 위치와 시설) 시장의 위치와 시설은 다음과 같다.	<p>제2조(시장의 위치와 시설) - - - - -</p> <table border="1"> <thead> <tr> <th>명 칭</th><th>위 치</th><th>면적</th><th>동 수</th><th>진평 (면적)</th></tr> </thead> <tbody> <tr> <td>중앙공설시장</td><td>충주시성서동 306번지일원</td><td>2,863m<sup>2</sup></td><td>1</td><td>4,559.15m<sup>2</sup></td></tr> <tr> <td>충주공설시장</td><td>충주시총의동 114번지 일원</td><td>1,750.18m<sup>2</sup></td><td>6</td><td>3,500.36m<sup>2</sup></td></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면적	동 수	진평 (면적)	중앙공설시장	충주시성서동 306번지일원	2,863m <sup>2</sup>	1	4,559.15m <sup>2</sup>	충주공설시장	충주시총의동 114번지 일원	1,750.18m <sup>2</sup>	6	3,500.36m <sup>2</sup>
명 칭	위 치	면적	동 수	진평 (면적)												
중앙공설시장	충주시성서동 306번지일원	2,863m <sup>2</sup>	1	4,559.15m <sup>2</sup>												
충주공설시장	충주시총의동 114번지 일원	1,750.18m <sup>2</sup>	6	3,500.36m <sup>2</sup>												

○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의5(간사 및 수당)</p> <p>①~②(생략)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의5(간사 및 수당)</p> <p>①~②(현행과 같음)          ③-----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각종위원회 실비 벤          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을 -----</p>
<p>제1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1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17조의2(기금결산)</p> <p>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p>	<p>&lt;삭 제&gt;</p>

○ 충주시충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노동복지회관은 충주시 충의동 14번 지 및 16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 14번 지 일원 ----- .

○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구성) ① ~ ②(생략) ③위원은 시장이 임명 도는 위촉하 되, <u>실과장중에서 6인</u> 이내의 위원을 <u>임명하고</u> , 공업단지조성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제11조(구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 과장중에서 허가민원과장, 환경 미화과장, 농업정책과장, 지역경제과 장, 지역개발과장, 도로과장을 당연 직 위원으로 하고 -----.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견) ① ~ ②(생략) ③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등 실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견)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주시각종 위원회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
제25조(공동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 ③(생략)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 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공동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 ③(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 ○ 충주시사토장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1. - - - - - - - - 배출 - - - 배출 - - - - - - - - - - - - - - -
2. ~ 4.(생략)	2. ~ 4.(현행과 같음)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장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5. - - - - - - - - - - - - - - - 배출 - - - - - - - - - -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②(생략)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호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삭제> - - - - - - - - - -
제20조(부과액 조정신청) ①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부과액 조정신청) ①- 이의 신청 율 - - - - -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의무의 승계)</p> <p><u>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 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징수는 고려하지 아니하다.</u></p>	<p>제22조(의무의 승계)</p> <p><u>&lt;삭 제&gt;</u></p>
<p>제24조(권한의 위임) ①(생략)        ②(생략)        1. ~ 9.(생략)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u>부과액 조정신청</u>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③(생략)        1. ~ 13.(생략)        1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u>부과액 조정 신청</u>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p>	<p>제24조(권한의 위임)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 9.(현행과 같음)        10. - - - - - - - - - - - - -        - - - - - - - - - <u>의의</u> - - - - -        - - - - - - - - - - - - -        ③(현행과 같음)        1. ~ 13.(현행과 같음)        14. - - - - - - - - - - - - - <u>의의</u> -        - - - - - - - - - - - - -        - -</p>

○ 충주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u>토석사력등</u>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 - - - -          - - - - - <u>토석, 사력등</u>          - - - - -          - - - - -          - - - - -          - - - - -</p>

○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u>세계현금의 예에</u>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 - - - -          - - - - - <u>일반회계의 예에</u> - - - - -          - - - - -</p>
<p>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충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p>

## ○ 충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상황반장,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 성한다. ② 통제관은 기획행정국장으로 하고, 상황반장은 경제건설국장, 담당관은 지역개발과장이나 되고, 실무반은 관련공무원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자 등으 로 한다.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 - - - - - <삭제>, - - - - - - - - - - ② - - - - - 경제건설국장 <삭제>, - - - - - - - - - -
제3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재해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군부대인 경 우 소령급이상 장교를, 경찰공무원 인 경우는 경정급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 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 는 자로 구성한다. 1. ~ 6.(생략) 7.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사무소 8. ~ 10.(생략) 11. 공군 3515부대, 육군 3105부대, 6010특공대, 3923부대, 3800부대	제3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 - - - - - - - - - 1. ~ 6.(현행과 같음) 7. - - - - - 충주권관리단 8. ~ 10.(현행과 같음) 11. 공군 3710부대, - - - - - - - - - -

○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부담금등 징수)</p> <p>① ~ ③(생략)          ④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u>부득이</u>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제3조(부담금등 징수)</p> <p>① ~ ③(현행과 같음)          ④-----          ----- &lt;삭제&gt;          -----          -----          -----          -----          -----</p>

○ 충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보험가입)</p> <p>시장은 특별회계로 부터의 자금을 용자받아 건설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로 하여금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관한법률 또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u>보험에</u> 하여야 한다.</p> <p>다만, 읍·면지역의 농촌주택 및 국민주택은 가입하지 않을 수 없다.</p>	<p>제15조(보험가입)</p> <p>-----          -----          -----          -----          -----          ----- <u>보험에</u> 가입하여야 한다.          -----          -----          -----          -----          ----- 아니할 수 있다.</p>

○ 충주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p> <p>① ~ ②(생략)          ③징수한 부속품대금은 수리센터 운영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p>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p> <p>① ~ ②(현행과 같음)  <u>&lt;삭제&gt;</u></p>

## ○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금의 조성) ①(생략)</p> <p>1. (생략)</p> <p>2.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과 <u>기타 수익금</u></p>	<p>제4조(기금의 조성) ①(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p> <p>- - - - - - - - - - - <u>기타 수입금</u></p>
<p>제14조(사업계획 및 기금결산) ①기금 운용관리는 매 회계연도마다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충주시농촌지도자회장, 충주시생활개선회장, 충주시4-H후원회장은 운용기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육성기금운영결산보고서와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3월 말일까지 기금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p> <p>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p>

○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진료수가)</p> <p>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 보험법에 의하여 교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p>	<p>제3조(진료수가)</p> <p>----- 국민 건강보험법에 ----- 건강보 험요양급여비용 ----- .</p>
<p>제6조(기타수가)</p> <p>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별지서식]증 7.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의 수수료 2,000원</p>	<p>제6조(기타수가)</p> <p>건강보험용양급여비용 ----- .</p> <p>----- .</p> <p>----- .</p> <p>[별지서식]증 7. ----- .</p> <p>----- 1,500원</p>

○ 충주시수도급수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②(생략) <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③ (생략)</p>	<p>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②(현행과같음) ③읍·면·동 광역상수도 신설공급 지역에 대하여는 급수공사비를 2년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급수관통 시설이 완료되어 급수가 가능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급수신청한 수용가에 한한다. ④제3항의 급수공사비 분할납부는 상수도 사용승인 후 시장은 다음달부터 수도요금과 병행하여 고지하고 수용가는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⑤(현행 제3항과 같음)</p>

#### ○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